

사외이사가 아닌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한 사유

2024. 3. 29

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 제13조(이사회 의장의 선임 등) 제2항에 의거,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한 사유를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.

- 아 래 -

1. 이사회 의장 선임 내역

구분	성명	직위
이사회 의장	윤용로	사내이사 / 회장

2. 사외이사가 아닌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한 사유

- 이사회 소집 및 회의 진행의 효율성 증진을 위함

3. 선임사외이사

구분	성명	직위
선임사외이사	남중수	사외이사

4. 이사회 승인일 : 2024. 3. 29

코 람 코 자 산 신 탁